

# 민원 요지 세 번째

민원인은 강릉시 강동면 ○○리 ○○○입니다.

민원인과 인접 마을 ○○리 ○○○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강동면 안인리 790 일원 군선강 하천부지 점용에 따른 각종 의혹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고 강릉시 하천시설계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안인리 790-8, 517번지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자경을 주장하고 있고 또 전대로도 단정하기 어려워 민원인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이 두 필지에 대하여는 하천점용허가 건이 모두 취소되었다고 귀 시에서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니 이해하고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인리 306번지 국유재산 대부허가 관련하여서는 귀 시에서 답변한 내용은 우리 사회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재차 문의를 드립니다. 물론 세번째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강릉시 건설행정계 담당자와는 사전 전화 통화를 충분히 하였으나 담당자의 변명은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귀 시에서는 “안인리 306번지는 국유재산으로 수허가자에게 대부허가”된 토지이고 “수허가자가 경작용으로 허가를 받은 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이 당시 제기한 수허가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귀 시에서는 수허가자가 대부허가 받은 땅이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원상 복구가 완료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반 행위 당시 적발하지 못하였기에 현재는 그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이나 조사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틀렸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의 법률에 의한다.

아래 첨부한 ‘하천점용 허가고시 제2020-466호’ 내용처럼 건설현장 임시주차장 부지로 약 1년 8개월 동안 허가된 사실 등으로 보아 점.사용 부지와 붙어있는 306번지 일부가 주차장 부지로 콘크리트 포장되고 또 화장실용 건축물이 크게 설치된 위반 사실을 행정관청 담당자가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불법 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아 래 -

강릉시 고시 제2020 - 466호

## 하천점용 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점.사용위치	면적 (㎡)	목 적	피 허가자	허가기 간
하천 2020- 281호	강동면 안인리 517 외 1필지(인접307-2)	1,633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현장 임시주차장 부지조성사업	강릉시 강동면 대동길 123 - 삼성물산(주) -	2020. 10. 22. ~ 2022. 6. 30.

2020년 10월 22일

물론 위와 같은 근거 외에도 아래 인터넷 위성 사진처럼 어린이집 아이들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위반 사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주차장 부지로 일부 사용된 306번지 면적을 확인해보면 대략 70여평 정도가 불법 사용된 것을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따로 있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니 왜 몰랐느냐까지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수허가자가 법 위반한 행위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 “수허가자가 경작용으로 허가를 받은 땅”이라 함은 농경지 즉 농지이고 농지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법규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농지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동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임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해당하고

둘째.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동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1항 2호.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제30조 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한 경우

3호.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을 위배한 경우

5호. 중앙관서(강릉시)장의 승인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동법 제82호(벌칙) 동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까지 민원인이 상세하게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목 조목 담당 공무원께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결국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업무 처리를 공정하게 하신 뒤에 그 처리 결과를 답변 주십시오.